

『 』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본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문물연구원의 학술지인 『문물』의 투고, 심사,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장)

『문물』의 투고,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.

제3조(발간 횟수)

『문물』는 매년 6월 30일 총 1회 발간한다.

제4조(게재 논문의 내용과 종류)

- 1) 고고학, 미술사, 박물관학, 한국사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2) 게재 논문의 종류에는 1)항과 관련된 연구논문,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, 관련분야 번역문 등이 포함된다.
- 3) 기타 한국문물연구원의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다.

제5조(논문 투고)

- 1) 투고 자격은 고고학, 미술사, 박물관학, 한국사 및 이에 관련된 전문 연구자를 원칙으로 한다.
- 2)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『문물』논문투고 신청서[별첨자료 1] 및 논문을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한국문물연구원 『문물』편집위원회로 보낸다.
- 3) 『문물』의 간행 2개월 이전에 투고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를 시행하고, 간행일 1개월 이전까지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해당 학술지에 게재한다.
- 4) 공동 필자일 경우,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.

제6조(논문 투고 세부사항)

- 1) 원고는 반드시 ‘한글’로 작성하여야 하며, 파일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(e-mail 또는 우편물로 제출)
- 2)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로 첨부하는 서식을 참조한다.
- 3)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(편집규정 참조)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.

4)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간행된 『문물』3부와 별쇄 20부를 필자에게 증정한다.

5) 그 외 문의사항:

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7-13번지 청운빌딩 한국문물연구원

『문물』편집위원회

Tel: 051-206-4201~2 Fax; 051-206-4209

Homepage: www.kaari.or.kr

#### 제7조(편집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)

- 1) 『문물』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2)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. 2차 심사는 별도로 위촉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.

#### 제8조(논문 심사)

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9조(심사결과 통보)

- 1)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可否를 통보한다.
- 2)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,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.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(기타)

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간행되는 『문물』 제1호 부터 적용한다.

[별첨 자료1]

## 『문물』 논문투고 신청서

투고자	한글		영문	
소속			직위	
전공			최종학력	
연락처	h.p:	유선:		
주소				
논문제목				
투고일			『문물』 계재호수	
논문형태	연구논문( ), 자료소개( ), 번역문( )			
기타사항	1. 한국문물연구원 학술연구비 수혜자 ( ) 2. 그 외			
<p>1. 본인은 한국문물연구원의 연구 학술지 『문물』에 논문을 투고합니다. 2. 『문물』의 연구윤리규정 및 그 외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 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책임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>『문물』편집위원회 귀하</p>				

\*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『문물』 논문투고 신청서 및 논문을 4월 30일까지 한국문물연구원 『문물』 편집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